



- ※ 산출내역: 50,184,107천 원 × 1.2/10,000 = 6,022천 원
- 2023년도 출연금액: 5,042천 원(산출비율 1.2/10,000)

#### 4. 기대효과

-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
- 지방세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및 지방세정 발전

#### 5. 참고사항

##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
- 2)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
- 3)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제18조

#####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

##### 다. 합의: 해당사항 없음

##### 라. 기타

- 1) 입법예고: 해당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#### 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##### 동의안 제출 배경

-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 이행을 위한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대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
##### 검토의견

-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타당성
  - 지방세연구원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임.

-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운용해야 함.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제3항의 규정으로 지방세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.

○ 출연금액의 적정성

- 2024년도 출연금액 6,022천원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제1항 및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(2022년)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2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적정함.

-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,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등 법적 근거에 의한 것으로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9. 13. 원안가결